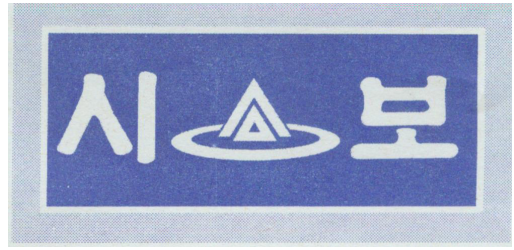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04호 2013. 8. 1.(목)

【고 시】

- 제2013-98호 공주월미2농공단지 계획(지정·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 제2013-100호 검상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9

【공 고】

- 제2013-1021호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34
- 제2013-1030호 공주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6
- 제2013-1049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회 람							
--------	--	--	--	--	--	--	--

공주월미2농공단지 계획(지정·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월미2농공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의거 농공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041-840-829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3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월미2농공단지(변경없음)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발전에 기여
 -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주시 산업구조 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기반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를 건설하고자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농공단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368-1일원
 - 나. 농공단지의 면적 : 72,670.9m²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가. 개발기간 : 2011년 ~ 2013년
 -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변경)

중분류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5개 업종	56,332	56,166	100.0	
C10 식료품 제조업	6,172	6,172	11.0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388	11,388	20.3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138	14,138	25.2	
C28 전기장비 제조업	4,726	5,699	10.1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908	18,769	33.4	

유치업종 중분류 CODE : 제9차 한국산업표준분류 기준 적용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141-5(신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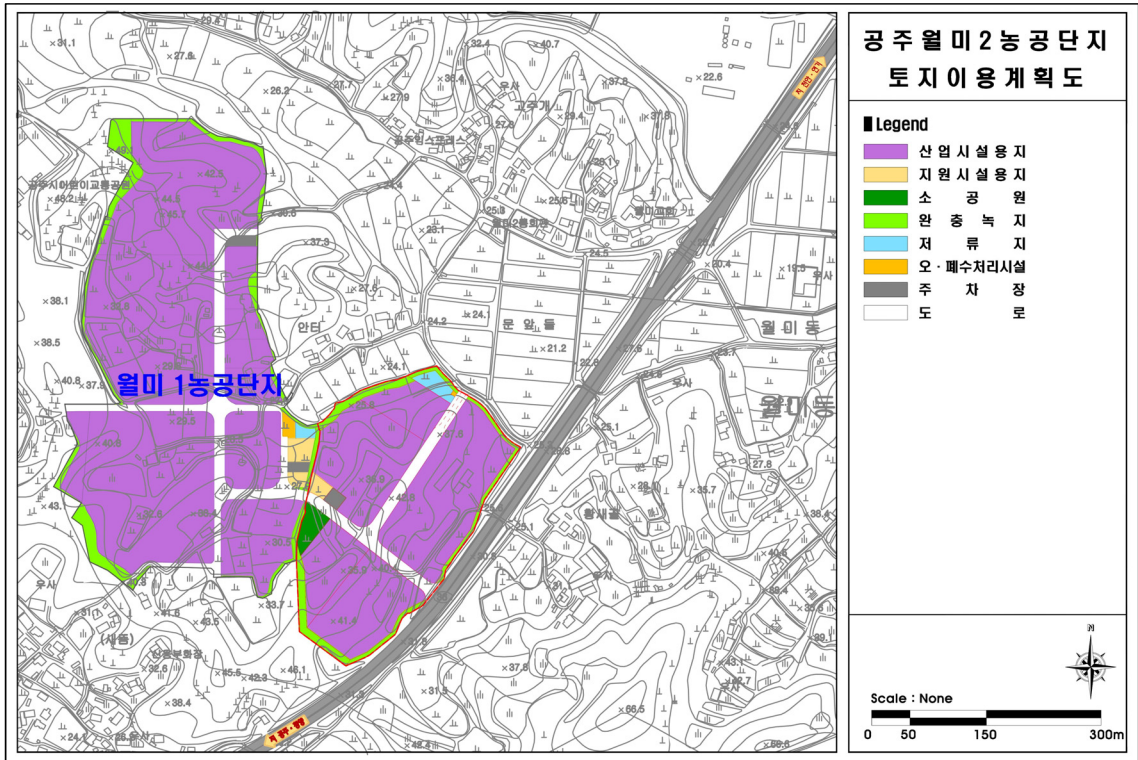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 공주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오홍규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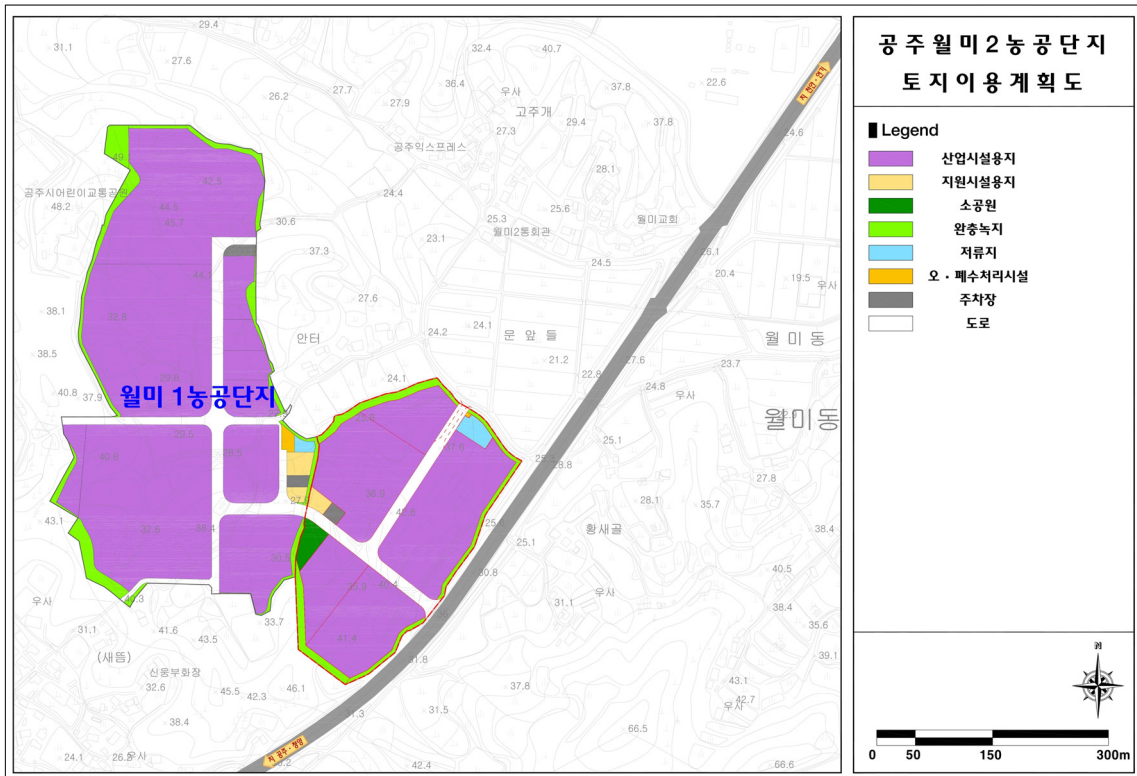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72,670.9	72,670.9		100.0		
산업시설용지	56,332.0	56,166.0	감) 166.0	77.3		
지원시설용지	619.0	619.0		0.9		
소계	15,719.9	15,885.9	증) 166.0	21.8		
공공시설용지	저류지	1,106.0	1,106.0		1.5	
	오·폐수처리시설	33.0	33.0		0.1	펌핑장
	공원	1,396.0	1,396.0		1.9	
	완충녹지	6,059.9	6,225.9	증) 166.0	8.4	
	주차장	434.0	434.0		0.6	
	도로	6,691.0	6,691.0		9.2	

< 토지이용계획(안) (기정) >



< 토지이용계획(안) (변경)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총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계	2	432	6,691	-	-	-	2	432	6,691	-	-	-
중로	2	432	6,480	-	-	-	2	432	6,480	-	-	-
기타	-	-	211	-	-	-	-	-	211	-	-	-

주 : 기타는 가각면적

나) 도로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208 (665.5)	382-4답	368-5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224	중로2-1	산45-3임	일반도로	농공단지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주 : () 단지의 도로 연장을 포함한 도로 총연장임

다)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월미동 368-1번지	434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2) 공간시설 계획(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월미동 383번지 일원	1,396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나) 녹지(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059.9	증)166.0	6,225.9	-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1번지 일원	1,830.9	-	1,830.9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366-1번지 일원	1,485.0	-	1,485.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②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366-1번지 일원	1,485.0	증)583.0	2,068.0		
폐지	③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370-1번지 일원	417.0	감)417.0	0.0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201번지 일원	1,607.0	-	1,607.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201번지 일원	1,607.0	-	1,607.0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2번지 일원	720.0	-	720.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④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2번지 일원	720.0	-	720.0		

※ 저류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의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

3) 방재시설 계획(변경)

가)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 시설	월미동 370-1번지 일원	1,106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①	유수지	저류 시설	월미동 368-3번지 일원	1,106		

4) 환경기초시설 계획(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월미동 산45-3번지 일원	33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①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월미동 368-3번지 일원	33		

5)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공업용수량 산정

유치업종		계획면적 (㎡)	원단위 (㎡/천㎡·일)	계획용수량 (㎡/일)	비고
기정	합 계	56,332	-	429.2	
변경		56,166	-	431.2	
기정	C10 식 료 품 제 조 업	6,172	11.13	68.7	
기정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388	4.64	52.8	
기정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신 장 비 제 조 업	14,138	14.62	206.7	
기정	C28 전 기 장 비 제 조 업	4,726	6.24	29.5	
변경	C28 전 기 장 비 제 조 업	5,699	6.24	35.6	
기정	C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제 조 업	19,908	3.59	71.5	
변경	C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제 조 업	18,769	3.59	67.4	

자료 :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안) 2008. 10』 환경부, 국토해양부

생활용수량 산정

구 분	계획인구(인)		원단위(ℓ/인/일)	계획용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31	424	-	41.2	40.5	
산업용지	402	403	-	38.3	38.4	
산업시설	상근인구	363	100	36.3	36.4	
	이용인구	39	50	2.0	2.0	
지원시설용지	29	21	100	2.9	2.1	

전체 용수량 산정

구 분	합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비 고
기정	용수량 470.4	429.2	41.2	
변경	용수량 471.7	431.2	40.5	

나) 오·폐수처리계획(변경)

오·폐수량 산정

구 분	계획 오·폐수량(㎡/일)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305.3	309.7	발생되는 오·폐수를 오·폐수처리시설 (펌핑장)을 통해 공주 월미1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
생 활 오 수	39.0	38.3	
공 업 폐 수	266.3	271.4	

다) 전력 공급계획(변경)

구 분			부지면적 (㎡)	단위부하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	18,217.8	
			-	-	18,314.6	
산업 시설 용지	기정 변경	소 계	56,332	-	18,004.7	
			56,133		18,101.5	
	기정	C10 식료품제조업	6,172	466	2,876.2	부지면적기준
	기정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1,388	214	2,437.0	부지면적기준
	기정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138	384	5,429.0	부지면적기준
	기정	C28 전기장비제조업	4,726	412	1,947.1	부지면적기준
	변경	C28 전기장비제조업	5,699	412	2,348.0	부지면적기준
	기정 변경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908	267	5,315.4	부지면적기준
		18,769	267	5,011.3	부지면적기준	
기정	지원시설용지		929	196.4	182.4	연면적기준 (150%)
기정	소 계		14,699	-	30.7	
공공 시설 용지	기정	도로	6,691	-	27.5	부지면적기준
	기정	주차장	434	-	1.8	부지면적기준
	기정	유수지	1,106	-	-	
	기정	오·폐수처리시설	33	1,718	0.3	
	기정	공원	1,396	-	1.1	부지면적기준
	기정	녹지	5,039	-	-	

라) 통신시설계획(변경)

규 모		회 선 기 준	통신수요(회선)	비 고
기정	변경			
384(상근인구)	385(상근인구)	1.0회선/10인	50	여유율 30% 적용

마) 에너지 공급계획(변경)

구분	면적 (㎡)	원단위 (Gcal/㎡·년)	직·간접열비율		간접열 수요량 (Gcal/년)	비고
			직접열	간접열		
기정	합 계	56,332	-	-	16,276.4	
변경		56,166	-	-	16,229.9	
기정	C10 식료품제조업	6,172	1.176	0.14	0.86	6,242.1
기정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388	0.356	0.285	0.715	2,898.7
기정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138	0.325	0.318	0.682	3,133.7
기정	C28 전기장비제조업	4,726	0.449	0.673	0.327	693.9
변경	C28 전기장비제조업	5,699	0.449	0.673	0.327	863.7
기정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908	0.331	0.498	0.502	3,308.0
변경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769	0.331	0.498	0.502	3,118.7

바) 폐기물처리계획(변경)

- 농공단지 내 총 폐기물발생량은 31.46톤/일 (생활폐기물: 0.31톤/일, 산업폐기물: 31.15톤/일)임
(기정: 32.63톤/일 (생활폐기물: 0.31톤/일, 산업폐기물: 32.32톤/일))
- 처리대상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 한 후 공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 불연성 폐기물은 최종처리업체,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임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72,670.9	100.0	
소계	72,670.9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72,670.9	100.0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참조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	공주 월미 2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월미동 368-1번지 일원	72,670.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주 월미 2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72,670.9㎡	공주 월미2 농공단지 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계	2	432	6,691	-	-	-	2	432	6,691	-	-	-
종로	2	432	6,480	-	-	-	2	432	6,480	-	-	-
기타	-	-	211	-	-	-	-	-	211	-	-	-

주 : 기타는 가각면적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종로	2	1	15	집산 도로	208 (665.5)	382-4답	368-5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기정	종로	2	2	15	국지 도로	224	종로2-1	산45-3임	일반도로	농공단지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주 : () 단지의 도로 연장을 포함한 도로 총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월미동 368-1번지	434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나) 공간시설(변경)

(1) 공 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월미동 383번지 일원	1,396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059.9	증)166.0	6,225.9	-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1번지 일원	1,830.9	-	1,830.9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356-1번지 일원	1,485.0	-	1,485.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②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356-1번지 일원	1,485.0	증)583.0	2,068.0		
폐지	③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370-1번지 일원	417.0	감)417.0	0.0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201번지 일원	1,607.0	-	1,607.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201번지 일원	1,607.0	-	1,607.0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2번지 일원	720.0	-	720.0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④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2번지 일원	720.0	-	720.0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완충녹지	•완충녹지2,3 합필 및 면적 변경 (증) 166.0㎡	• 유수지 및 오·폐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3호 폐지
③	완충녹지	•완충녹지④ → 완충녹지③ 도면표시번호 변경	• 완충녹지3호 폐지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변경
④	완충녹지	•완충녹지⑥ → 완충녹지④ 도면표시번호 변경	• 완충녹지3호 폐지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변경

다) 방재시설(변경)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월미동 370-1번지 일원	1,106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①	유수지	저류시설	월미동 368-3번지 일원	1,106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유수지	• 월미동 370-1번지 일원 → 월미동 368-3번지 일원 위치 변경	• 인근 농경지 주변의 민원발생 소지를 방지하며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유수지 위치 변경

라) 환경기초시설(변경)

(1)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월미동 산45-3번지 일원	33	공주시 고시 제2012-30호 (2012.3.26.)	
변경	①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월미동 368-3번지 일원	33		

○ 오·폐수처리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오·폐수 처리시설	• 월미동 산45-3번지 일원 → 월미동 368-3번지 일원 위치변경	• 인근 농경지 주변의 민원발생 소지를 방지하며 원활한 오·폐수 처리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오·폐수처리시설 위치 변경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합계	56,332	-	56,332		
변경		56,166		56,166		
기정	산업 시설 용지	산업1	기정 : 18,864	1	14,138	
변경			변경 : 19,837	2	4,726	
기정		산업2	19,908	1	19,908	
변경			18,769		18,769	
기정		산업3	17,560	1	11,388	
				2	6,172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지원시설용지	지원1	619	1	619	

다) 공공시설용지(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1,573		1,573	
공공시설용지	공공1	1,106	1	1,106	유수지(위치변경)
	공공2	33	1	33	수질오염방지시설(위치변경)
	공공3	434	1	434	주차장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3	산업시설용지 산업1 ~ 산업3	용 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주변지역과의 완충기능 또는 경관기능의 식재를 할 것	
		건축선	중로2-2호선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그 외 중로, 국도 36호선변 5m 건축한계선 지정	

나) 지원시설용지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지원시설용지 지원1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 치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건축선	-	

다) 공공시설용지

○ 우수지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1	공공시설용지 공공1	용 도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저류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배 치	-	
		건축선	-	

○ 수질오염방지시설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2	공공시설용지 공공2	용 도	허용용도	공주 월미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장에서의 연계처리를 위한 펌핑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배 치	-	
		건축선	-	

○ 주차장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3	공공시설용지 공공3	용 도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2조제11항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 치	-	
		건축선	-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53필지	-	85,922.8	72,670.9						
기정	1	월미동	201	답	1,614.0	1,614.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 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2	월미동	202-6	구	94.0	94.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미등기
기정	3	월미동	202-3	답	457.0	457.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 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4	월미동	356-1	답	1,223.0	1,223.0	오병찬	공주시 월미동 377-2				
기정	5	월미동	367-1	구	106.0	10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6	월미동	367-2	전	834.0	834.0	오광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191-3 현대아파트102-405				
기정	7	월미동	368-1	전	14,614.0	14,614.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 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8	월미동	368-2	전	10,699.0	10,699.0	오용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904동 1102호(상대동, 도안신도시트리플시티아파트)	공주농업협 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9	월미동	368-3	전	3,622.0	3,622.0	오병일	공주시 옥룡동 245-28				
기정	10	월미동	368-4	전	3,622.0	3,622.0	오순자	공주시 월미송곡길76(월미동)	공주 원예농업 협동조합	공주시산성동 180-18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11	월미동	368-6	전	6,897.0	6,897.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 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12	월미동	368-8	전	4,752.0	4,752.0	윤순수	대전시 서구 월평동302 황실타운108-1201				
기정	13	월미동	368	전	1,266.0	1,266.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 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14	월미동	369-1	답	1,408.0	1,408.0	오병찬	공주시 월미동377-2				
기정	15	월미동	369	답	136.0	136.0	오병찬	공주시 월미동377-2				
기정	16	월미동	370-1	답	572.0	572.0	오병찬	공주시 월미동377-2				
기정	17	월미동	370-2	구	205.0	20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18	월미동	371	전	995.0	995.0	오순자	공주시 신관동19 주공아파트401-1304				
기정	19	월미동	372	답	338.0	338.0	허경연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1-5	공주연기 축산업 협동조합	공주시신관동 601-8	근저당권	
기정	20	월미동	373-1	전	1,230.0	1,230.0	허동만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3 망포마을 현대1차아파트 107-1703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 1가75(공주시지부)	근저당권	
기정	21	월미동	373-2	제	76.0	76.0	허동만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3 망포마을 현대1차아파트 107-1703				
기정	22	월미동	374-1	답	132.0	132.0	허동만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3 망포마을 현대1차아파트 107-1703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 1가75(공주시지부)	근저당권	
기정	23	월미동	380-2	답	2.0	2.0	국토해양부	국				미등기
기정	24	월미동	381-3	답	59.0	59.0	국토해양부	국				미등기
기정	25	월미동	382-2	제	10.0	10.0	박창현	공주시 월미동 282				
기정	26	월미동	382-8	답	75.0	75.0	국토교통부	국				미등기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27	월미동	382-5	담	192.0	192.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 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28	월미동	382-6	담	93.0	93.0	국토교통부	국				미등기
기정	29	월미동	382-7	담	36.0	36.0	국토교통부	국				미등기
기정	30	월미동	382	담	271.0	271.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 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31	월미동	383	담	2,221.0	2,221.0	공주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117	공주농업협 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32	월미동	412-3	구	19.0	19.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등기
기정	33	월미동	412-4	구	204.0	204.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등기
기정	34	월미동	412-5	구	39.0	39.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등기
기정	35	월미동	414-10	도	657.0	657.0	국토교통부	국				미등기
기정	36	월미동	414-11	도	84.0	84.0	국토교통부	국				미등기
기정	37	월미동	420-9	구	99.0	99.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등기
기정	38	월미동	420-10	구	434.0	434.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등기
기정	39	월미동	420-11	구	135.0	135.0	농림축산식품부	국				미등기
기정	40	월미동	424-3	도	101.0	101.0	국토교통부	국				미등기
기정	41	월미동	424-4	도	10.0	10.0	국토교통부	국				미등기
기정	42	월미동	424-5	도	19.0	19.0	국토교통부	국				미등기
기정	43	월미동	424	도	9.0	9.0	국토교통부	국				
기정	44	월미동	450	도	16,321.8	3,069.9	공주시	공				
기정	45	월미동	산41-2	임	1,291.0	1,291.0	오석균	공주시 우성면 신울리138				미등기
기정	46	월미동	산42-2	임	1,983.0	1,983.0	조미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1091 화곡푸르지오110-702				
기정	47	월미동	산42	임	3,322.0	3,322.0	조대형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1087-5 원흥타운-703				
기정	48	월미동	산44-2	임	298.0	298.0	오병찬	공주시 월미동377-2				
기정	49	월미동	산44-3	임	198.0	198.0	오병찬	공주시 월미동377-2				
기정	50	월미동	산45-6	임	702.0	70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미등기
기정	51	월미동	산45-4	임	992.0	99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52	월미동	산45-7	임	450.0	450.0	오병길	공주시 월미동136				미등기
기정	53	월미동	산45-8	임	704.0	704.0	오병길	공주시 월미동136				미등기

10. 지장물(물건)(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계		48종						
1	월미동	368-4, 371	주택1	세멘브럭, 스레이트	64.31 ㎡	오순자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송곡길 76(월미동)	
2	월미동	368-4, 371	주택돌레 포장	콘크리트	39.27 ㎡	"	"	
3	월미동	368-4, 371	가차1	쇠파이프,목재, 양철판넬	72.45 ㎡	"	"	
4	월미동	368-4, 371	주택2	세멘브럭, 양철판넬	37.18 ㎡	"	"	
5	월미동	368-4, 371	가차2	목재, 양철판넬	27.06 ㎡	"	"	
6	월미동	368-4, 371	축사1	경량철골, 스레이트	200.53 ㎡	"	"	
7	월미동	368-4, 371	축사2	경량철골, 스레이트	54.00 ㎡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8	월미동	368-4, 371	양계장	목조,그물망, 스레이트,	9.67 ㎡	"	"	
9	월미동	368-4, 371	닭		7 마리	"	"	
10	월미동	368-4, 371	창고겸 장독대	세멘트블럭, 슬라브	11.23 ㎡	"	"	
11	월미동	368-4, 371	관정	소공	1 식	"	"	
12	월미동	368-4, 371	외부계단	콘크리트(W=0.63)	1 식	"	"	
13	월미동	368-4, 371	평상	목재(2.94*1.79)	1 식	"	"	
14	월미동	368-4, 371	바닥포장	보도블럭	7.17 ㎡	"	"	
15	월미동	368-4, 371	화단1	돌	6.37 ㎡	"	"	
16	월미동	368-4, 371	화단2	돌	6.12 ㎡	"	"	
17	월미동	368-4, 371	화단3	돌	8.85 ㎡	"	"	
18	월미동	368-4, 371	정화조	세멘트콘크리트 (1.5*1.0)	1 식	"	"	
19	월미동	368-4, 371	대문	슬라브,철 (3.11*2.0(H))	1 식	"	"	
20	월미동	368-4, 371	담장	세멘트블럭 (H=1.8)	24.0 m	"	"	
21	월미동	368-4, 371	대나무군		782.00 ㎡	"	"	
22	월미동	368-4, 371	방나무1	B=0.05, H=2.8	2 주	"	"	
23	월미동	368-4, 371	방나무2	B=0.3, H=10.0	30 주	"	"	
24	월미동	368-4, 371	감나무	B=0.3, H=10.0	5 주	"	"	
25	월미동	368-4, 371	호두나무	B=0.3, H=10.0	4 주	"	"	
26	월미동	368-4, 371	살구나무	B=0.2,H=6.0	1 주	"	"	
27	월미동	368-4, 371	은행나무	B=0.5,H=10.0	2 주	"	"	
28	월미동	368-4, 371	두릅나무	H=2.0	21 주	"	"	
29	월미동	368-4, 371	주목	W=1.5,H=1.7	1 주	오순자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송곡길 76(월미동)	
30	월미동	368-4, 371	개나리	R=0.1,H=1.7	1 주	"	"	
31	월미동	368-4, 371	연산홍	W=2.4,H=1.8	1 주	"	"	
32	월미동	368-4, 371	취뽕나무	W=0.5,H=0.5	2 주	"	"	
33	월미동	368-4, 371	소나무	W=2.4,H=2.5	1 주	"	"	
34	월미동	368-4, 371	꽃나무	H=1.7	1 주	"	"	
35	월미동	368-4, 371	기타수목1	R=0.8,H=2.0	1 주	"	"	
36	월미동	368-4, 371	기타수목2	B=0.04,H=1.7	1 주	"	"	
37	월미동	368-4, 371	기타수목3	B=0.04,H=4.0	1 주	"	"	
38	월미동	368-4, 371	기름보일러	유류탱크(1000L)포 함	1 식	"	"	
39	월미동	368-4	영농보상		3,190 ㎡	"	"	
40	월미동	371	영농보상		875 ㎡	"	"	
41	월미동	372	영농보상		338 ㎡	허경연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1-5	
42	월미동	373-1	영농보상		1,230 ㎡	허동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3 망포마을 현대1차아이파크 107-1703	
43	월미동	374-1	영농보상		132 ㎡	"	"	
44	월미동	373-2	농업용전기		1 식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45	월미동	373-2	관정	소공	1 식	"	"	
46	월미동	373-2	관정함		1 식	"	"	
47	월미동	산41-2	밤나무	10년생 (H=5.0)	22 주	오석균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38	
48	월미동	산41-2	매실나무	8년생 (H=2.5)	4 주	"	"	

11. 지형도면 고지도면(축척 1/1,000) : 게재 생략.

검상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공주시 고시 제2013-79호(2013.06.17.)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검상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검상농공단지

나.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다. 면 적(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6,975.0	증) 349.9	397,324.9	
기	준 공 단 지	298,533.0	-	298,533.0	
솔	브 레 인	84,802.0	증) 349.9	85,151.9	
아	세 아 산 업 개 발 (주)	13,640.0	-	13,640.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여, 개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검상농공단지(계획입지로)로 지정변경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솔 브 레 인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3 ○ 시 행 자 : 대표 정지완
아세아산업개발(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12 아세아빌딩 2층 ○ 시 행 자 : 대표 서효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7년 ~ 2013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업체별	유치업종			
소 계		65,803.8	100.0	
솔 브 레 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0,953.1	47.1	
		21,210.7	32.2	
아세아 산업개발(주)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13,640.0	20.7	

* 기 준공단지(92.12.30) 제외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6,975.0	증) 349.9	397,324.9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321,222.3	-	321,222.3	80.8	
지 원 시 설 용 지	19,816.4	증) 349.9	20,166.3	5.1	
공 공 시 설 용 지	50,417.3	-	50,417.3	12.7	
도 로	31,033.5	-	31,033.5	7.8	
주 차 장	2,039.8	-	2,039.8	0.5	
관 리 사 무 소	6,087.1	-	6,087.1	1.5	
오·폐수처리장	9,124.0	-	9,124.0	2.3	
배 수 지	2,132.9	-	2,132.9	0.5	
녹 지 시 설 용 지	5,519.0	-	5,519.0	1.4	
완 충 녹 지	5,519.0	-	5,519.0	1.4	

7.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계획

1)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중로	7	2,684	31,033.5	-	-	-	1	352	5,263.0	6	2,332	25,770.5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태	주 경 과 지	최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352	290-4답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6	12	집산도로	520	중로1-9	대주이엔티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10	중로1-9	중로2-10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8	12	집산도로	300	중로1-9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9	12	집산도로	200	중로3-16	중로3-18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0	12	집산도로	180	상진산업	검상동 725-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1	12	보조간선도로	322	중로2-18	상진산업	일반도로	농공단지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11	주차장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나. 공간시설계획

1)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519.0	-	5,519.0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봉정동 563-3번지 일원	5,020.2	-	5,020.2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297-10번지 일원	498.8	-	498.8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4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검상동 725-2	2,132.9	-	2,132.9		

라. 방재시설계획

1)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3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오·폐수 처리장	검상동 726-3	9,124.0	-	9,124.0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가. 용수공급계획

구 분	용수량(m ³ /일)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539.1	539.1	-	
공 업 용 수	453.0	453.0	-	
생 활 용 수	86.1	86.1	-	

나.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오수량(m ³ /일)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195.6	195.6	-	
공업폐수	178.1	178.1	-	
생활오수	17.5	17.5	-	

다. 전력공급계획

구 분	연간전력수요량(MWh/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20,145.2	20,145.2	-	
생산시설	20,031.0	20,031.0	-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도로, 주차장)	114.2	114.2	-	

라. 통신시설계획

구 분	통신수요(회선)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1,736	1,736	-	
산업시설	1,447	1,447	-	
공중전화	289	289	-	

마.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연간열수요량(Gcal/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2,573	2,573	-	
생산시설	2,573	2,573	-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 생략)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검상 농공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솔브레인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3 ○ 시 행 자 : 대표 정지완
아세아산업개발(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12 아세아빌딩 2층 ○ 시 행 자 : 대표 서효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적 : 농공단지 개발

나. 개요

- 개발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솔브레인 주요업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아세아산업개발(주) 주요업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나. 면적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6,975.0	증) 349.9	397,324.9	
기 준 공 단 지	298,533.0	-	298,533.0	
솔브레인	84,802.0	증) 349.9	85,151.9	
아세아산업개발(주)	13,640.0	-	13,640.0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7년 ~ 2013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6,975.0	증) 349.9	397,324.9	100.0	
공업지역	396,975.0	증) 349.9	397,324.9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2,114.0	-	22,114.0	-	
준 공업지역	374,861.0	증) 349.9	375,210.9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중로	7	2,684	31,033.5	-	-	-	1	352	5,263.0	6	2,332	25,770.5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태	주 요 과 지	최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352	290-4답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6	12	집산도로	520	중로1-9	대주이엔티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10	중로1-9	중로2-10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8	12	집산도로	300	중로1-9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9	12	집산도로	200	중로3-16	중로3-18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0	12	집산도로	180	상진산업	검상동 725-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1	12	보조간선도로	322	중로2-18	상진산업	일반도로	농공단지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11	주차장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2) 공간시설계획

가)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519.0	-	5,519.0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봉정동 563-3번지 일원	5,020.2	-	5,020.2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297-10번지 일원	498.8	-	498.8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4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검상동 725-2	2,132.9	-	2,132.9		

4) 방재시설계획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3	수 질 오 염 방 지 시 설	오·폐수 처리 장	검상동 726-3	9,124.0	-	9,124.0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공주 23 24	검상 농공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공주시 검상동 ·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396,975.0	증) 349.9	397,324.9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21,222.3		321,222.3	-	321,222.3	
①	-	255,418.5	공주시 검상동 725-9번지 일원	255,418.5	-	255,418.5	
	2-1	52,163.8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299-1번지 일원	30,953.1	-	30,953.1	
	2-2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21,210.7	-	21,210.7	
	2-3		공주시 검상동 산1-35번지 일원	-	-	-	
	3-1	13,640.0	공주시 검상동 173번지 일원	13,640.0	-	13,640.0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0,166.3		19,816.4	증) 349.9	20,166.3	
③	1	20,166.3	공주시 검상동 산1-35번지 일원	19,816.4	증) 349.9	20,166.3	

나)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시 변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383.8		19,383.8	-	19,383.8	
②	2	6,087.1	공주시 검상동 729-5번지	6,087.1	-	6,087.1	관리사무소
	3	9,124.0	공주시 검상동 726-3번지	9,124.0	-	9,124.0	오 폐수처리장
	4	2,132.9	공주시 검상동 725-2번지	2,132.9	-	2,132.9	배수지
	11	2,039.8	공주시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주차장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용지 ①-1	검상동 725-10번지 일원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2-1	검상농공단지 검상동 298-3번지 일원	용 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허용 용도	중분류 (코드번호)	업 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용적률	25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7조)		
		높 이	4층(20m) 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①-2-2 ①-3-1	검상농공단지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용 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허용 용도	중분류 (코드번호)	업 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용적률	25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7조)		
		높 이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③-1	검상동 산1-35번지 일원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다) 공공시설용지 - 관리사무소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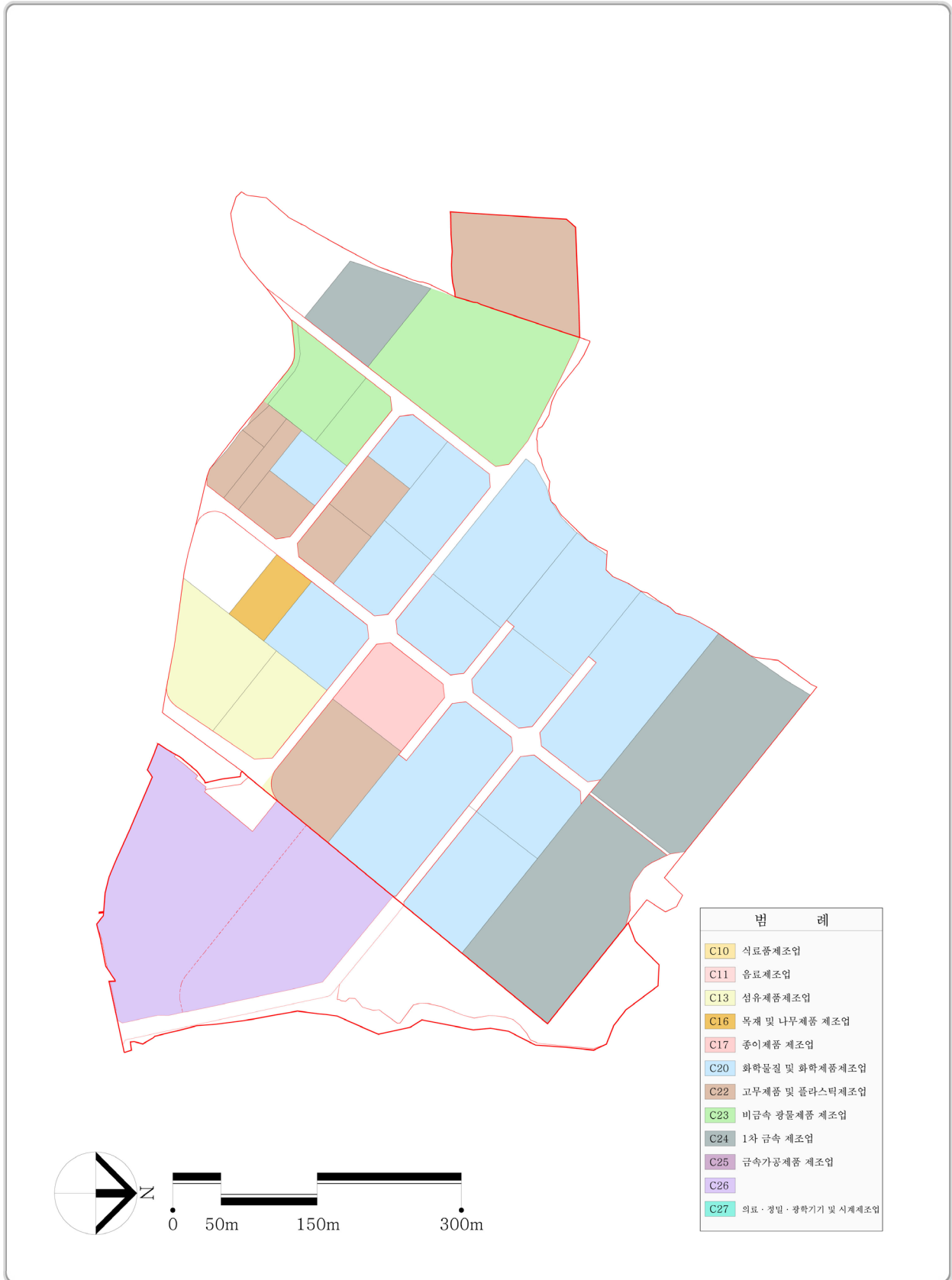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②-2	검상동 729-5번지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 의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계획 - 계재생략

< 별첨 1 >

<업종별 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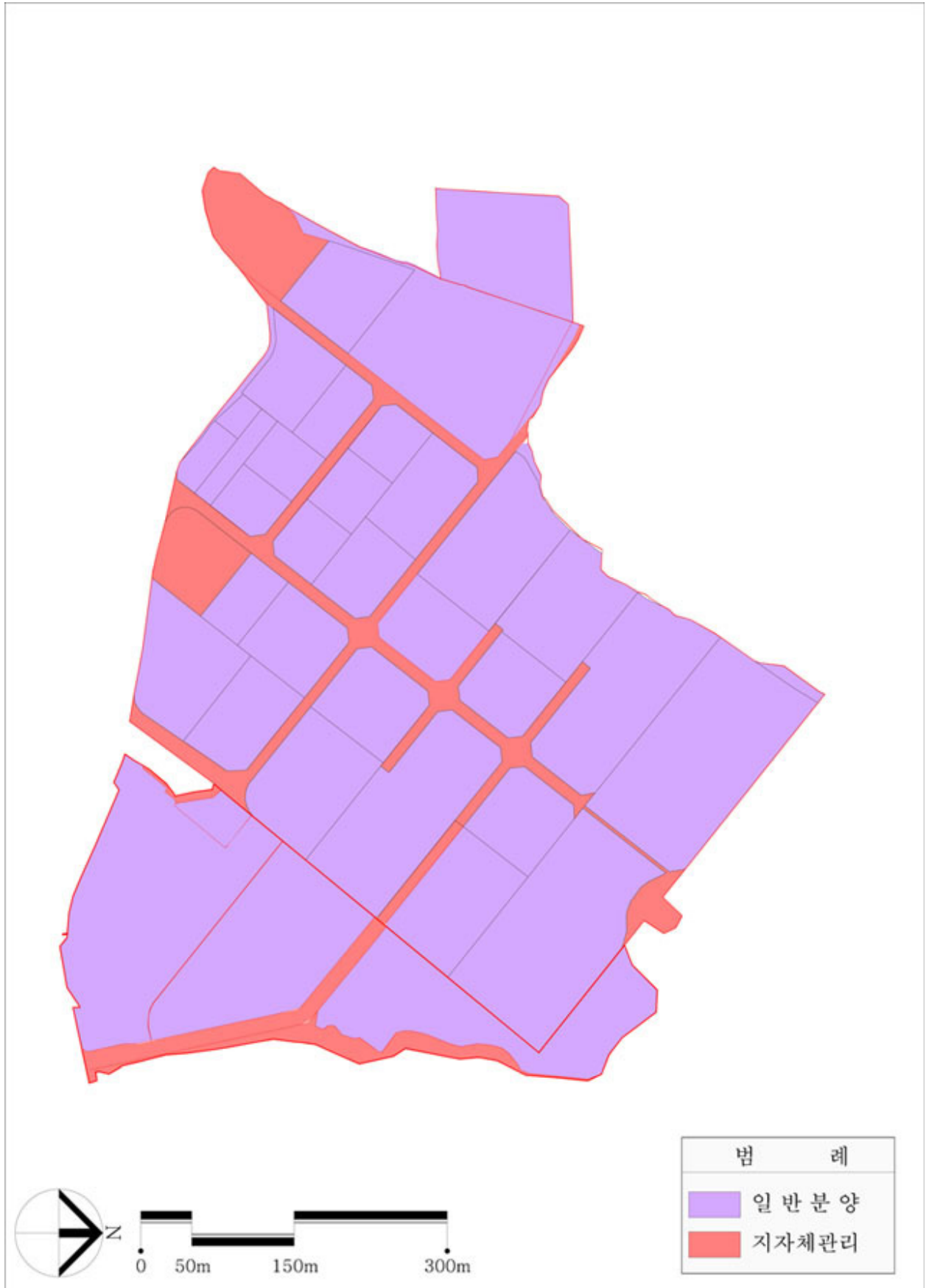
<별첨 2>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별첨 3 >

< 관리처분계획도-변경 >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1. 폐기 및 신조 공인 : 공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인 외 4개
2. 신조 및 폐기 공인 인영

소 관 부서명	공 인 명	인 영	폐기근거(사유)	비고
토지과	공주시지적재조사 위원회인		-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 법(2012.03.16.)' 및 '공주 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 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13.05.01.)' 제정에 따 른 공주시지적재조사위원 회 및 공주시경계결정위원 회 운영	사용개시일 2013.8.1.
	공주시경계결정 위원회인			

소 관 부서명	공 인 명	인 영	폐기근거(사유)	비고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과)	공주시재난관리과 분임경리관인		-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재난관리과 → 안전관리과)	활용종료일: 2013.7.22.
	공주시재난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공주시재난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공주시 공고 제2013-1030호

「공주시 공영차고지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8월 0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매입한 현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를 공영차고지로 운영함으로써
- 시내버스 정류장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공영차고지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 중 “114-6(금홍동 418)”을 “114-16(금홍동),공주시 산성시장 5길 34-33(산성동), 공주시 산성시장 5길 42-21(산성동), 공주시 산성시장 5길 78-20(금성동),공주시 산성동 195-1, 산성동 195-7, 공주시 금성동 20-4, 20-31, 20-49, 172-1, 172-3”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8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교통과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국고개길 20 (우편번호 314-050)

- 전 화 : 041-840-8490

- FAX : 041-840-216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14-6(금홍동 418)”을 “114-16(금홍동),공주시 산성시장 5길 34-3
3(산성동), 공주시 산성시장 5길 42-21(산성동), 공주시 산성시장 5길 78-20
(금성동),공주시 산성동 195-1, 산성동 195-7, 공주시 금성동 20-4, 20-31, 20
-49, 172-1, 172-3”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공주시 의당로 <u>114-6(금흥동 418)</u> 일원에 두며 “공주시 공영차고지”라 한다.</p>	<p>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 - <u>114-16(금흥동), 공주시 산성시장 5길 34-33(산성동), 공주시 산성시장 5길 42-21(산성동), 공주시 산성시장 5길 78-20(금성동), 공주시 산성동 195-1, 산성동 195-7, 공주시 금성동 20-4, 20-31, 20-49, 172-1, 172-3</u> ----- -----.</p>

공주시 공고 제2013-1049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명시된 센터의 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확보하고
-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은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보완, 수탁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6조제3항 센터의 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 조례 제8조제2항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
- 조례 제8조제4항 센터의 장 명칭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사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사회과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 041) 840 - 8134 FAX : 041) 840 - 230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을 ““자원봉사활동”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자원봉사단체”라 함은”을 ““자원봉사단체”란”으로, “행하거나”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봉사센터”라 함은”을 ““자원봉사센터”란”으로, “수행하기”를 “하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공주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을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을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중 “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비영리법인에게”를 “비영리법인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을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으로, “2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으로 하여”를 “법인으로”로,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동법 제43조”를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장 1인”을 “센터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정책결정기구로서”를 “정책결정기구로써”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인으로 하여”를 “법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를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로, “구성하고”를 “구성하고,”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직·운영에 관하여”를 “조직·운영에”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중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를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매 회계년도”로,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전”을 “해당 회계연도 시작 1월 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로, “회계년도 2월말”을 “회계연도 2월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서 규정한”을 “제2항의”로, “회계년”을 “회계연”으로, “하며, 이를”을 “하며,”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을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대하여 그 공헌”을 “공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실시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시장은”을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로, “등에 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자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를 “자원봉사자의”로, “공제료를”을 “공제료를 센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를 “다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의”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를 “자원봉사자의”로 한다.

제18조 중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를 “자원봉사자에게”로 한다.

제1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p> <p>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 -----.</p> <p>1. “자원봉사활동”이란 ----- ----- ----- ----- -----.</p> <p>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자원봉사단체”란 ----- ----- 하거나 ----- ----- -----.</p> <p>4. “자원봉사센터”란 ----- ----- 하기 ----- 따라 ----- -----.</p>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조정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 마련-----

----- .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

----- 마련-----

-----공주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 .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

치는 -----

③ -----

----- 갖춘 사람 -----

----- 10명 이상 20명

이내----- .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생략)

②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
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
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 공개모
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
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
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
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
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
장을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
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센터장을 선
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
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
-----.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 비영리법인에 -----
-----.

----- 인정하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은 2년으로 한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 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동법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

면 -----
-.

② -----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

-----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 법인으로 -----
-----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

④ ----- 센터장 1명-----

-----.

⑤ -----
정책결정기구로써 -----
----- . ----- 법인으로 -----
----- .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

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⑦ (생략)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성하고, -----
----- 사람으로 -----.

⑦ (현행과 같음)

⑧ ----- 조직·운영
에 -----
-----.

제9조(센터의 지원) -----

-- 범위-----.

제10조(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모든 사항-----.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다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매 회계연도-----
----- 해당 회계연도 시작 1월 전-----
----- . --- 변경하는 경우-----.

② -----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 회계연도 2월말-----
-----.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 ③ (생략)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과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 제2항의 -----
----- 회
계연-----
--- 하며, -----
-----.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

---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헌-----.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할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자보

5. --- 밖에 -----

제15조(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 자원봉사자----- 등에 --- -----.

제17조(보험가입) ① -----
-----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

-----.

② ----- 보험 또는 공제가입

-----.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자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시장에게 일

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③ (생략)

제18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신청하여야 한다.

2. ----- 자원봉사자의 ----- 공제료를 센터에 -----.

3. -----
-----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의 -----

----- 자원봉사자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실비지급) -----
----- 자원봉사자에 게 -----.

제19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 에 -----
-----.